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9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정재 · 박덕흠 · 이달희
최은석 · 박충권 · 최수진
강명구 · 김대식 · 서천호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 계속 중인 선거소청·선거소송·당선소송의 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6. 사전투표, 투표관리,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절차의 제도개선에 관

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조직·인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1.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에 관한 사항
2.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 제222조에 따른 선거소송 및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개별 사건에 관한 사항

제49조의2제3항 중 “특별위원회”를 “선거관리감독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6항 단서 중 “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의”를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및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감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의장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행정안전위원회 가.·나. (생략) 다.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u></p> <p>라. (생략)</p> <p>10. ~ 17.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가.·나.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다. (현행 라목과 같음)</p> <p>10. ~ 17. (현행과 같음)</p> <p>18. <u>선거관리감독위원회</u>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7조의2(선거관리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u></p> <p>1.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p> <p>2. <u>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u></p>

3.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
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
항

4.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6. 사전투표, 투표관리, 개표관
리 등 선거관리 절차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조직·인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할 수 없
다.

1.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
· 개표 사무에 관한 사항

2.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
는 선거 결과 확정에 관한 사
항

4.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 제222조에 따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

른 선거소송 및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심리·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 개별 사건에 관한 사항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선거관리감독위원회, 특별위원회-----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및 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p>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p>	<p>----- -----. ⑦ ~ ⑨ (현행과 같음)</p>
--	--